

13. 2026.2.5. 일자로 만70세가 되는 자를 2025.9.1.~2026.2.28.까지의 기간제교원 채용건에 대해 임용이 가능한가?
- ☞ 기간제교원의 임용 상한 연령은 만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에는 예외적으로 1차에서 65세까지, 2차부터 70세 까지 임용할 수 있음. 단, 채용일 기준으로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채용일이 만 70세 생일 전이고 계약종료일은 당해학기 이내 이므로 임용 가능함.
14. 정규교원의 육아휴직(2018.3.1.~2019.2.28.)으로 동일기간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였으나 휴직기간 중 출산으로 육아휴직 조기복직(2018.10.3.)과 이어 출산휴가(2018.10.3.~2018.12.31.)와 육아 휴직(2019.1.1.~2019.8.15.)을 내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임용 처리는?
- ☞ 결원사유의 변경이 있음을 내부결재로 남기고 기간제교원의 2019.2.28.까지의 계약기간을 보장함. 이후 결원 기간(2019.3.1.~2019.8.15.)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함.
  - ※ 결원사유(휴가, 휴직 등)가 반드시 사전결재 완료된 후 공고 및 채용 가능
15. 기간제교원이 재직 중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경우에 대체 기간제교원의 채용이 가능한지?
- ☞ 기간제교원의 휴직은 불가(육아휴직 제외)하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 2, 3, 4, 5, 10, 11, 12, 13, 14, 15, 16항을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휴가 기간을 대체하는 계약제교원의 채용도 가능함. 또한, 특별휴가 종료일은 계약종료일을 넘지 못하며 교육비특별회계 기간제교원 인건비로 지급 가능함.
16. 정규교원의 휴직사유 소멸에 의한 조기복직으로 기간제교원에게 계약 해지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제교원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기간제교원과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함. 정규교원의 휴직사유 소멸로 인한 조기복직에 따라 계약 해지 시, 계약 해지 예고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17. 초등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지?
- ☞ 「교육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교사의 신규임용의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의거 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함. 또한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원 임용시 교사의 신규임용기준을 준용하여 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함. 따라서, 초등학교 기간제교원은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함. 다만, 초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의 경우 교과전담에 한하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임용 할 수 있지만,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함.
  - ※ 단, 2025학년도 교육부 늘봄학교 운영 정책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경우 초등교원 수급 인력난을 고려하여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음. (2025.3.1.부터 2026.2.28.까지 한시적 시행)